

(공고문) 서울지역 감정노동 사업주/관리자 교육 지원

□ 취지

- 「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(2016. 1.)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안(2018. 10. 18. 시행) 및 관련 사항에 따라 사업주/관리자의 감정노동보호 인식 증진 도모
- 감정노동 직군 사업장(대/소규모), 시 및 시 사업소, 투자·출연기관 및 자회사, 시 민간위탁 기관 등의 사업주와 담당 관리자(감정노동 업무 담당자 포함)을 대상으로 주요 개념, 관련 법/제도, 매뉴얼 등으로 구성된 교안으로 교육 시행하여 안정성 제고
- 교육 강사단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시행 및 강사단 확대 양성

□ 개요

1. 사업명 : 서울지역 감정노동 사업주/관리자 교육 지원 사업
2. 사업 기간 : 2019. 1. ~ 12. / **(시범)운영 기간 : 2019. 10. ~ 11.**
3. 지원 대상

구분	내용
대상	- 서울 주요 감정노동 직군 사업장/기관 - 서울시 산하기관, 서울시 MOU 기업 협력사, 민간위탁기관 등
지원자격	- 위 대상 기관·사업장 <u>사업주, 관리자, 감정노동 업무 담당자, 보건 담당자 등</u> - 최소 5인 ~ 30인 이내로 구성된 집단 (30인 이상일 경우, 별도 문의)

4. 교육 장소 : 신청 장소에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 (출강 형태)
 *교육 장소 없을 시, 사전 협의 후 서울시감정노동센터 교육장(최대 20명 이내)에서 진행 가능.
5. 교육 시간 : 1시간 (최대 1시간 30분)
6. 교육 형태 : 강연형 (질의응답 포함)
7. 교육 주요 내용
 - 감정노동 배경, 감정노동 주요 개념 및 사례
 - 감정노동 정책/법률(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의무사항, 관련 예시 등)
8. 교육비 : 무료

□ 신청 방법

1. 운영/신청 기간 : 2019. 10. ~ 11. (2개월)

*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, 실제 교육은 12월 10일(월)까지 시행함.

2. 신청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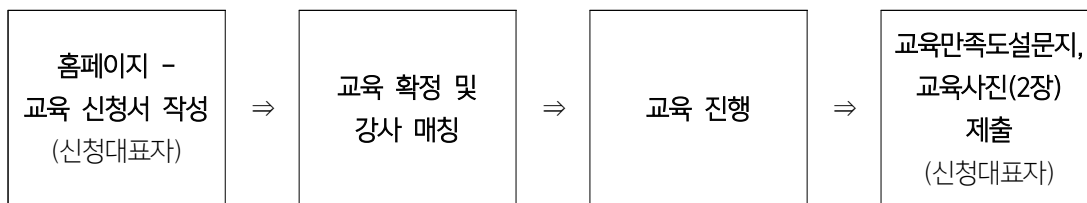
1) 서울시감정노동센터 홈페이지(<http://emotion.or.kr/>)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*홈페이지 -> 주요사업 -> 신청하기 -> **사업주/관리자 교육 신청**

3. 신청 결과 : 담당자 신청 접수 확인 후, 1주일 내 신청대표자에게 확정 이메일 발송

4. 교육 운영 절차 및 결과보고

○ 진행 절차



○ 결과보고 (교육 종료 후, 3일 이내에 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)

- 신청대표자 : 교육만족도설문지 배포 및 수거, 회신 이메일 제출
- 강사 : 교육결과보고서 제출

5. 문의 :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(담당 : 교육기획위원 오지은)

-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메일 : jeoh@emotion.or.kr, 전화 : 070-4610-4055

(소개) 감정노동 사업주 / 관리자 교육

<사전 안내>

- 서울시감정노동센터는 2017년 하반기부터 감정노동자 권익 존중을 위한 교육으로, '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감정노동 사업장/기관의 감정노동자, 사업주, 관리자 등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, <감정노동 개념, 주요 사례, 피해예방과 치유 방안, 감정노동보호방안>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
- 2019년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하는 '감정노동 사업주/관리자 교육'은 사업장 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사업주(대표자), 관리자를 대상으로 <산업안전보건법(2018. 10. 16.시행)에 따른 사업주 의무사항, 사업장 내 보호방안 구축(운영 사례 포함)>을 통해 감정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합니다.

○ 교 육 명 : 감정노동 사업주/관리자 교육

○ 교육 방식 : 출강 등

○ 교육 대상 : 감정노동 기관/사업장 - 사업주, 관리자 등

- 사업주, 대표이사, 감정노동 업무·관리 담당자, 유관 업무 관리자, 보건 담당자 등

○ 교육 목적

- 사업장/기관 내 (대표)관리자의 감정노동 보호 인식 확보
- 사업장/기관 내 감정노동 보호 제도 구축, 개선 도모

○ 교육 주요 내용

- 감정노동 사업주 및 관리자를 위한 감정노동 개념 및 배경 소개
- 감정노동 보호 정책 및 제도, 관련 법률 안내
- 사업장/기관 내 감정노동보호제도 파악 및 관련 제도 구축 방안 안내